

「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길 의원

2. 찬 성 자: 김영태 의원 외 7인

3. 제안이유

-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, 재난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반환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사용료의 반환(안 제15조)
- 사용료 감면 요율(별표 3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2조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
 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, 제21조의3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, 제6조, 제12조, 제19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체육센터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맞추어 개정하고, 재난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반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체육시설·체육센터·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간 서로 상이하게 운영중인 사용료 반환·감면 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절차의 일관성 확보와 행정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행사 사용료 감면 대상 단체 확대로 공공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반환 사유와 사용 개시 전후 기준의 구체화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‘재난이 예고된 경우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